



#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 보험감독당국의 대응<sup>1)</sup>

최예린 연구원

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클레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,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기피하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침. 유럽의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 및 정책을 발표하여 기후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

- 기후변화는 보험회사의 보유계약 및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의 보험감독당국들은 기후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권고안 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응하고 있음
  - (보유계약)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화재보험 및 홍수보험의 클레임을 증가시키며, 특히 보장 갭이 큰 신흥국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욱 큼
    - 한편 이러한 보장갭은 지수형 보험<sup>2)</sup> 또는 보험연계증권<sup>3)</sup>과 같은 상품으로 축소할 수 있음
  - (자산) 환경 및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 산업 투자를 저탄소 산업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, 그린본드, 그린채권과 같은 대체 자산군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
  -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(IAIS)를 비롯한 유럽보험연금감독원(EIOPA), 영국 건전성감독원(PRA), 영국 금융감독원(FCA) 등 유럽 보험감독당국들은 기후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권고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
-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(IAIS)에서는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(TCFD)의 권고안을 준수하

1) Clifford Chance(2020), "Climate Change in the 2020s: The decade for insurers to lead"를 발췌, 요약함  
 2) 자연재해 또는 감염병 등이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닌 온도, 강수량, 감염자 수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보험  
 3) 자연재해 발생 시 투자자가 재보험사를 대신해 보상 책임을 갖고, 보험료를 수익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

도록 하며, 국제보험감독기준을 확립하여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함

- IAIS는 특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비해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가 권고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
    - TCFD란 2015년 확립된 태스크포스로, 금융 및 비금융기업이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및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권고안을 개발하였으며, 현재는 권고안이나 2022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<sup>4)</sup>
  - 한편 TCFD 권고안은 의무가 아니기에, IAIS는 보험핵심원칙(ICP)을 확립하여 보험회사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각 회사의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
    - IAIS의 국제보험감독기준인 ICP란 총 25개 원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가운데 20은 공시에 관련한 항목임
- 유럽보험연금감독원(EIOPA)은 자기자본규제제도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, 영국 건전성감독원(PRA), 영국 금융감독원(FCA) 등도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 및 위험관리를 진행하도록 권고함
- EIOPA는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솔벤시 II 및 선량한 관리자 원칙(PPP)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각 보험회사의 위험 프로파일에 적합한 시나리오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테스트하여 질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<sup>5)</sup>
  - PRA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PPP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제도 및 자본적정성평가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함<sup>6)</sup>
    - 영국 회사법 2006 172항(이사회는 선의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)<sup>7)</sup>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보고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위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사회가 보험회사의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
    - 또한, 기후변화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 전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함
  - FCA는 2020년 초 TCFD 권고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공개 법안을 발표하여 보험회사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급여력평가제도 및 자본적정성평가에도 기후변화 위험이 포함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

4) TCFD(2017) “TCFD Recommendations Report”

5) EIOPA(2019. 9. 30) “Opinion on Sustainability within Solvency II”

6) BOE(2019. 9), “Solvency II: Prudent Person Principle”

7) Section 172 of the Companies Act 2006, UK Legislation

〈그림 1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타임라인



자료: Clifford Chance(2020), Climate Change in the 2020s: The decade for insurers to lead 참조 재구성

-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무적 영향에 대비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에서, 보험회사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상품을 개발하고, 각 회사의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
  - 신한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DGB금융지주 등 기업이 TCFD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국내 금융기관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, 세계 최고 규모의 일본 공적연금펀드 운용법인도 2018년 12월 TCFD 지지 선언을 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및 연기금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
  - 보험회사는 지수형 보험 또는 보험연계증권으로 보장갭을 감소시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고, 보험회사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기후변화 위험을 인지하여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무적 위험에 대비하고 지속가능보험이라는 큰 흐름에 대비해야 할 것임 **kiri**